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944 발의연월일: 2023. 5. 11.

발 의 자:이만희·전봉민·박성민

김 웅・조은희・장제원

김용판 · 김상훈 · 정우택

이채익 · 김기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('23. 4. 27.)을 발표한 바 있음.

이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,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고,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 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36조의4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216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6조의4(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) ①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(이하 이 조에서 "전세사기피해자"라 한다)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전세사기피해주택"이라 한다)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 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.
 - 1.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산출세액"이라 한다)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 - 2.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.
 -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.
 - 1.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- 2.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
-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- ④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6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규정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이법 시행 전에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임차권 등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 - ② 제36조의4제4항 개정 규정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

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6조의4(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
	위한 감면) ① 「전세사기피해자
	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
	법」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전세
	사기피해자(이하 이 조에서 "전
	세사기피해자"라 한다)가 같은
	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(이
	하 이 조에서 "전세사기피해주
	택"이라 한다)을 경매 또는 공매
	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
	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
	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.
	1.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
	취득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산출
	세액"이라 한다)이 200만원 이
	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
	<u>한다.</u>
	2.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
	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
	만원을 공제한다.
	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
	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
	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
	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

- 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.
- 1.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-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
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
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
 다.
-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 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 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 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- ④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 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